P-129-2013

화학공장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김태옥
- O 제정 경과
 - 2013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ISO 9001 7.6항, "모니터링 장비 및 측정장비 관리"
 - ISO 14001 4.5.1항, "모니터링 및 측정"
 - KOSHA/OHSAS 18001 4.5.1항, "성과측정 및 모니터링"
 - 국가표준기본법
 - KOLAS-G-012 "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"
 - KOLAS-G-013, "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"
 - KOLAS-G-020, "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"
 - KOLAS-R-001, "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"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3년 7월 19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-129-2013

화학공장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어있는 계측기에 적용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교정 (Calibration)"이라 함은 계측기가 측정하여 표시하는 값이 참값인지의 여부를 공인된 표준값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(나) "소급성 (Traceability)"이라 함은 계측기의 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 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,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.
 - (다) "표준물질 (Reference materials)"이라 함은 기기 오차, 개인 오차 등의 실험 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물질로, 미리 검증된 분석값이 알려진물질을 말한다.
 - (라) "시험·검사기관"이라 함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·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·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한 기관을 말한다.
 - (마) "측정 (Measurement)"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.
 - (바) "계측기 (Measuring instrument)"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보조장치와 결합하여 측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

P-129-2013

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사항

- 4.1 계측기 관리 구분 및 대상
 - (1) 계측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.
 - (가) 중요 계측기는 계측기의 이상이 공정과 작업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량을 필요로 하는 계기를 말한다.
 - (나) 보조 계측기는 계측기의 이상이 공정과 작업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, 중요 계측기 정도의 정확한 계측량을 요구하지 않은 계측기를 말한다.
 - (다) 참조 계측기는 계측기의 이상이 공정과 작업자의 안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, 단순히 정보전달이나 계측값을 참고로 하고자 하는 목적의 계측기를 말한다.
 - (라) 단순 계측기는 공정과 작업자의 안전에 직·간적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, 단지 계측값을 참고로 하고자 하는 목적의 계측기를 말한다.
 - (2) 계측기의 관리대상은 계측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화학공장 설비의 폭발, 화재, 누출 등에 의해 작업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로 하며, 다음의 사 항에 해당하는 계측기로 제한한다.
 - (가) 화학공장의 중요 공정설비에 설치된 계측기중 압력계, 온도계, 유량계, 액위계 및 분석계를 대상으로 한다.
 - (나) 중요 공정설비는 설비의 이상 시에 공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기, 탑조류(Tower), 압력용기, 저장탱크, 열교환기, 압축기 및 펌프와 이와 연결된 설비 중에서 화학물질(가연성 물질, 독성 물질 등)을 처리하는 설비로 한정한다.

4.2 계측기 교정 목적 및 대상

(1) 계측기의 교정목적은 다음과 같다.

P-129-2013

- (가) 기준값과 측정기를 사용해서 얻어진 값 사이의 편차의 추정값을 향상시키고, 측정기가 실제로 사용될 때 이러한 편차에 의한 불확실성(Uncertainty)을 감소 시킨다.
- (나) 측정기를 사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확도(Accuracy)를 재확인한다.
- (다) 계측기를 설치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측정기의 의심 되는 변화가 있는 가를 확인한다.
- (2) 계측기 교정대상은 화학공장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정확한 계측량이 필요한 계측기로서 계측기 관리대상 중에서 중요 계측기와 보조 계측기로 한다.

4.3 계측기 점검 목적 및 대상

- (1) 계측기의 점검목적은 계측기의 계측값의 정확성 보다는 작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
- (2) 계측기 점검대상은 공정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측기, 보조 계측기 및 참조 계측기로 한다.

5. 계측기 관리 및 점검

5.1 교정 및 점검 시기

- (1)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교정대상 계측기 중 법정 계측기는 해당 계측기의 법적기준에 따른다.
 - (나) 교정대상 계측기 중 법적 계측기를 제외한 계측기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계측기의 정밀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정주기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KOLAS "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"에서 권고하는 주기를 준용한다.
 - (다) 교정주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측기 담당자, 공정 담당자, 안전 담당자 등의 전 문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계측기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
P-129-2013

- (가) 계측기에 대한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인터록이나 로직(Logic)과 관련된 계측기 중 공정가동 중에 점검이 어려운 계측기는 정기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하고,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 등을 작성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5.2 계측기 교정 및 점검 방법

5.2.1 교정방법

- (1) 계측기의 교정은 외부교정과 내부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- (가) 외부교정은 공인된 교정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없을 때에 제조사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다.
 - (나) 내부교정은 외부교정된 표준 계측기에 의하여 소급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 격성이 보장된 담당자에 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 교정 담당자의 적격성 평가 시 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①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능력
 - ② 측정설비 및 측정기의 운용능력
 - ③ 보유 교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
 - ④ 측정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
- (2) 화학공장에 설치된 계측기는 외부교정 및 내부교정 대상 계측기로 분리하여 목록 화 하여야 한다.
 - (가) 교정대상 계측기는 화학공장 공정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전에 필수적인 계측기로 한다.
 - (나) 외부교정 계측기는 자체교정이 어려운 계측기나 내부교정의 소급성 유지에 필 수적인 표준 계측기로 한다.
- (3) 내부교정 계측기는 교정대상 계측기 중 외부교정 계측기를 제외한 계측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내부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급성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므로, 다음

P-129-2013

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내부교정에 사용되는 표준 계측기는 공인된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계측기로, 허용오차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.
- ② 내부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표준 계측기가 아닌 경우에 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표준 계측기에 의하여 교정된 계측기이어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교정이 여러 단계로 실시된 경우 최상위의 계측기는 반드시표준 계측기에 준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교정된 계측기이어야 한다.
- (나) 내부교정 성적서에는 사용된 상위 계측기와 이 계측기의 교정준수(교정일자 등)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.
 - ① 표준 계측기의 사용이 어려운 계측기(분석기기 등)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내부교정 담당자는 계측기 검·교정 교육 등을 이수한 자로, 내부 적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책임자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.
- (4) 외부교정 계측기는 다음과 같이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외부교정 계측기는 공인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(나) 외부교정 계측기 중 교정기관에서 교정이 어려운 계측기(분석기기 등)는 제조 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일반적인 교정은 현장 계측장치에 대하여만 교정을 실시하고 있고, 실제적으로 DCS(분산제어시스템) 등을 도입한 화학공장은 모니터 상에서 계측값을 인지하고 있으므로, 현장 계측기에서 모니터까지의 전송기(Transmitter) 및 전송선(Loop)에 대한 교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대부분의 전송기 및 전송선의 경우 전류값(4 ~ 20 mA)에 의하여 계측값의 0 ~100%가 표시되므로, 교정기(Calibrator)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(나) 이 경우 사용되는 교정기 등의 장치도 교정이 이루어진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교정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.

5.2.2 점검방법

P-129-2013

- (1) 현장설치 계측기는 다음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(가) 계측기의 정상 작동상태
 - (나) 계측기의 설치 상태 및 진동 여부
 - (다) 외부 에너지원의 공급상태
 - (라) 계측기 전단에 여과기(Strainer)가 설치된 경우 여과기의 이 물질 제거
 - (마) 동결 방지시설의 작동상태
 - (바) 지침의 파손(변형) 상태
 - (사) 계측기 외부의 변형 및 파손 상태
 - (아) 보호판(관)의 파손상태
 - (자) 기기와 연락관의 연결상태
 - (차) 측정범위에 적합한 기기 설치 여부
 - (카) 계측값의 인지 가능 여부
 - (타) 계측기 내부유체의 누출 여부 등
- (2) 계측기 전송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(가) 외함(Case) 상태(부식, 탈락, 파손 및 밀봉(Sealing) 상태)
 - (나) 지시계(Indicator) 상태
 - (다) 본체 및 외함의 페인트 상태(벗겨짐 및 부식)
 - (라) 본체 연결부위 도압배관(Impulse line) 상태(누설 및 부식)
 - (마) 계측기 모세관 보호용(Capillary remote seal type)의 보호막(Diaphragm) 상태 (누설 및 파손)
 - (바) 3방향 유도(3-Way manifold) 밸브 상태(누설, 부식 및 탈락)
 - (사) 도압배관 밸브(누설 및 부식)
 - (아) 공정 연결 플랜지 상태

P-129-2013

- (자) 공정 연결 블록밸브 상태
- (차) 도압배관 상태(극소구멍(Pin hole) 발생, 누설 및 부식)
- (카) 설치대의 볼트/너트 상태
- (타) 계측기 지지대 상태(진동 여부 및 고정상태)
- (파) 동결방지 공급상태(스팀, 전기 등)
- (하) 보온재 상태(탈락 및 파손)
- (거) 전선(Cable) 방폭 실링피팅(Sealing fitting) 및 LB(전송관 부속품) 상태(부식 및 탈락)
- (너) 전선 보호용 플렉시블(Flexible) 배관 상태(부식 및 탈락)
- (더) 전선 보호용 금속관 상태(부식 및 파손)
- (3) 예비 계측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(가) 먼지 등 이물질 부착상태
 - (나) 실내 온도 및 습도(해당되는 경우)
 - (다) 진동이나 충격 발생 여부
 - (라) 낙하 방지 및 차광 상태
 - (마) 부식성 요인의 제거상태 등
- (4) 점검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.

5.3 그 밖의 사항

(1) 교정

- (가) 오리피스 사용 유량계 등과 같이 탈착이 어렵고, 또한 교정이 어려운 계측기는 교정기 등을 사용하여 전송기 전단에서 표시장치까지 교정하여야 한다.
- (나) 인터록이나 로직과 연결된 계측기는 정기보수 기간을 이용하여 교정을 실시하여 한다.

P-129-2013

- (다)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이 가능한 계측기(유리형 액위계 등)는 교정에서 제외한다.
- (라) 교정된 계측기는 사용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내부교정 환경(온도, 습도 등)이 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부교정 장소 환경기준은 KOLAS "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"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바) 교정에 표준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표준물질 누출에 다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,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- (사) 현장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실에서 관련 계측기의 오지시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.

(2) 점검

- (가) 계측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고, 화학물질 및 압력에 의하여 작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점검작업 전에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다) 개인보호구(보안경, 보호장갑 등)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인원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(라)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조정실에서 관련 계측기의 오지시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.

(3) 사후 조치

- (가) 계측기를 교정 및 점검한 이후 계측기가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이 어려운 경우 에는 계측기를 즉시 제거하고, 정상적인 계측기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나) 중요 계측기 및 보조 계측기는 화학공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예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.
- (다) 계측기의 교정 및 점검 작업 전에 안전을 위하여 인터록 및 비상정지 시스템을 우회(Bypass)시킨 경우에는 작업 후에 반드시 우회를 해지하여야 한다.
- (라) 중요 계측기의 예비품 부족으로 화학공장의 안전을 위하여 인터록 및 비상정지 시스템의 우회가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